

第97回(定期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9年12月21日(火) 09時59分

場 所 運營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政會設置 및 育成支援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政會設置 및 育成支援條例(案)(洪起瑞議員 外 9人 發議) 2面

(09時59分 開議)

○委員長 洪起瑞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종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벌써 한해를 보내고 새천년과 한세기를 맞이할 날도 며칠 안남은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을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금년도 의정활동은 오늘로서 사실상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 취득한 경험과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전처리 및 의회운영 등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정중한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난 8월 14일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지방자치법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직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규칙들은 시달되지 않았지만 이에 따른 조례안 등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사항들은 본 위원회 소관이므로 우리 모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 상호간에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보람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대해마지 않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慶洙 議事擔當主事の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張慶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99년 12월 6일 洪起瑞議員 外 9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이

'99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洪起瑞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 (案)(洪起瑞議員 外 9人 發議))

(10時03分)

○委員長 洪起瑞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다룰 안건에 대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 부득이 의사 진행을 간사로 대신하여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幹事님이 진행을 맡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洪起瑞委員長, 金福同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金福同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을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洪起瑞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洪起瑞議員 洪起瑞議員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종로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원 구성은 종로구의회의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은 지방자치제도 발전 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와 종로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도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경비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임 구의원 으로 구성된 의정회의 활동 및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종로구의회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 (案)

(洪起瑞議員 外 9人)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福同 洪起瑞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蔣昭秀 專門委員!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99년 12월 6일자 洪起瑞議員님 外 9人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종로구의회 전·현직 의원을 회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종로구 의정회가 정식 법인으로 인가됨에 따라 의정회의 지원 육성을 도모해서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드리면 의정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방자치 홍보 발행 등이 주요 추진사업이 되겠고 다음 주요한 사항은 의정회에 구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결산의 절차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자료입니다. 종로구 의정회가 정식으로 설립인가된 것은 '99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인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회장은 이두학회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설립 근거법규 및 인가기준입니다. 인가근거는 민법 제32조 또 공익법인의설립

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본 법의 내용은 주무관청은 여기 주무관청은 원래는 행자 부장관이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현재 인가는 서울시장이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수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에 적합하기 때문에 인가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본 법인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해 소관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는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회계년도의 개시 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회계년도 종료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서 주무관청에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은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한위임 사항은 행자부장관 권한이 서울시장한테 위임되는 권한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정회 관련조례는 지방의회의 역사가 쌓일수록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일부 상위법과 상충점으로 전 구에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데 조례로 특정 예산편성을 규정할 수 있는 가라는 점과 또 조례에서는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관계로 예산 및 결산보고를 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법에서는 서울시장한테 하도록 하는 점과 상충되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유보상태에 있었으나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본 조례를 기이 제정하여 1억원 내외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은평구도 '99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 구에서 이에 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福同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長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金以煥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以煥委員 金以煥委員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의 각 의회에서 몇개 구나 의정회가 지금

○洪起瑞議員 洪起瑞議員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은평도, 지금 강남구가 진행중에 있고 송파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조례가 개정된 곳은 두군데가 있고 현재 진행중인 곳이 4, 5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金以煥委員 현재 진행중인 데가 4, 5군데가 되고

○洪起瑞議員 완전히 확정된 곳이 은평하고 서울시하고

○金以煥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다양하게 몇가지가 이렇게 즉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지

○洪起瑞議員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金以煥委員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주면 여기에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洪起瑞議員 의정회에서 우리 의회에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세미나랄까 어떤 시민들 교양강좌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집행부 우리 의회하고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以煥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좀더 구체화해서 뭔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더 투명하고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이 예산을 갖다 쓰는데 예산을 집행하면 조례상 몇조, 몇조 해가지고 아까 蔣昭秀 專門委員께서 말씀하시기를 구

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뭐 거기에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의원이고 또 의회에서 이러한 것을 다 하니가 의회에서 어떠한 승인을 받고 또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이러한 형식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洪起瑞議員**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청의 지원을 받지만 우리가 정액보조로는 지원을 못하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거든요. 작년도에도 2,000만원을 우리가 해냈는데 조례가 없어서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2000년도에는 배정을 받게 되면 모든 정산서가 넘어옵니다마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분들이 정밀하게 쓰여졌는가를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전부다 감독권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金以煥委員**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동 행정감사를 하듯이 이제 그러한 식으로 잘 쓰여졌는가 감사를 할 수는 있다

○**洪起瑞議員** 감사도 할 수 있고 예산을 신청할 때도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그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以煥委員** 우리 의회에서 인정해줬을 때

○**洪起瑞議員** 그것은 우리 임의보조금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로에. 보면 사회단체 YMCA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도 거기 한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鄭泰淳議員**이 아마 심의위원이신데 그랬을 때 심의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었을 때 배정이 되는 거죠.

○**金以煥委員** 좋습니다. 의원이고 의회발전을 위하고 종로구 발전을 위하고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임의보조금 차원이 아니고 다르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洪起瑞議員**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액보조로는 나갈 수는 없습니다.

○**金以煥委員** 타구에도 다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洪起瑞議員** 예, 그렇죠.

○**金以煥委員** 타구의 예를 가지고 심의하고 있

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福同 金以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憲九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憲九委員 李憲九委員**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회계년도의 개시 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승인을 받았죠. 그러면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개시가 되는데 의정회에서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는 즉시 바로 새해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되겠죠?

○**洪起瑞議員** 그렇죠.

○**李憲九議員** 그리고 또 은평은 '99년 10월에 조례제정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 내용을 보셨습니까?

(○**專門委員 蔣昭秀 關係官席**에서 - 은평 조례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은평에서는 사업내용에 자체 의정회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데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요건과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렇죠? 수익사업을 할 수도 없고

(○**專門委員 蔣昭秀 關係官席**에서 - 은평은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한 것은 종로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종로구청장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집행하고 난 다음에 사업보고를 하고 우리 의회는 의장한테 그 계획서를 승인받은 것을 보고만 하게 되어 있죠?

○**洪起瑞議員** 그렇죠. 그러나 의장한테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타당 안했을 때는 부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이 끝나고 나면 행

정감사를 결산할 때나 이럴 때 우리 의원들이 결산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성이나 모든 것을 지적할 수가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질의를 마치면서 의정회는 전직 의원과 현직 의원이 같이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정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의정회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洪起瑞議員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福同 李憲九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李炯述委員님!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질의과정에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의정회 육성 발전 또 의정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 의원들이 할 몫을 한몫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라든가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주요 연구 이러한 부분도 바로 현직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전직 의원들 의정동우회에서는 한다고 보면 기이 주무관청인 법인설립을 할 때 인가해주는 주무부서가 서울시장이고 또 그 재원을 조달해 줄 수 있는 그 분들이 서울시장이면 종로구청장이든 의정회에 작년도같은 경우에 2,000만원 예산을 책정해두고도 의정동우회 기금을 넣어주지 못했던 지방단체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안했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에 또 서울시장이 이 사단법인 설립을 인가해준 서울시장 소속 하에 서울시의회에서도 기이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1억원 내

외의 기금도 이미 조달이 되었다고 본다면 우리 의원들 여기 조례는 우리 현직 의원들이 모두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원안을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고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福同 李炯述委員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李炯述委員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은 미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도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제3조2항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반드시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동의절차를 생략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전 11시에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속 위원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종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5分 散會)

○出席委員 7人

洪起瑞 金福同 鄭泰淳 李憲九
李炯述 金以煥 金正大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姜光日

[The page contains extremely faint and illegible text, like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document. The text is too light to transcribe accurately.]